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. 11. 26 선고 2020가단319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

피 고

A

B

변론 종결 2020. 11. 12

판결 선고 2020. 11. 26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전 588㎡ 2층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〈가〉부분 23.035㎡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,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, 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9. 12. 3.부터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2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원고가 2001. 5. 11. 파주시 C 전 588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경매절차에서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,피고는 2019. 12. 3. 파주시 D E호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,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2, 3, 4, 5, 6, 7, 8,1의 각 점을순차로연결한 선내<가>부분 23.035㎡을 침범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5, 6, 7, 8, 1의 각 점을 순차로연결한 선내<가>부분 23.035㎡지상 주채를 철거하고 그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할의무가 있다.

한편,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침범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권취득일인 2019. 12. 3.부터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,위 토지 부분의 월 차임이 20만 원 상당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박현진

별지